인사혁신처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일시 2025. 3. 25.(화) 12:00

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·수사자료 활용 강화

- 7월부터 징계자료 요청 가능,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화·· 「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-

앞으로 공무원이 **비위 혐의로 감사원**이나 **검찰·경찰** 등에서 조사·수사를 받으면 **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**할 수 있게 된다.

또한,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**징계부가금**의 **체계적 관리를 위해 '징계부가금 관리대장'**을 **의무적으로 마련**한다.

인사혁신처(처장 연원정)는 이 같은 내용의 **「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안**을 **입법예고**한다고 25일 밝혔다.

지난해 12월 **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**된 이번 개정안은 **오는 7월 1일**부터 **시행**된다.

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·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.

첫째, **소속 기관장**이 **감사원 및 검·경 등에 조사·수사자료를 요청**할 수 있게 된다.

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**근거 규정이 불명확**해 **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**가 있었다.

이번 개정으로 **행정기관장**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**조사자료**(감사보고서·문답서·확인서 등) **및 검·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**(신문조서·진술조서·공소장 등)를 **확보**할 수 있게 된다.

이에 따라 **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**하고 적절한 **징계 양정**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둘째, **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**된다.

징계부가금은 **공무원의 금품·향응 수수**와 **공금의 횡령·유용 비위**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.

'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'은 그동안 **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**하도록 돼 있고,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**기관**에서 **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.**

앞으로는 **징계부가금 부과, 납부, 체납 시 징수 현황** 등을 **종합적으로 기록·관리할 수 있는** 일관된 양식의 '징계부가금 관리대장'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, **전자인사관리체계**(시스템)에도 **반영·관리**할 예정이다.

연원정 인사처장은 "개정을 통해 **공무원 징계 절차** 등 운영의 **합리성**과 **실효성**이 **제고**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**징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**은 **지속 개선**해나가겠다"고 말했다.

※ (붙임) 「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안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윤리복무국	책임자	과 장	김재선 (044-201-8440)
	복무과	담당자	사무관	조영우 (044-201-84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「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안 주요 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비고
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 항목 신설	▸ 징계절차 진행 시 행정기관이 조사·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 항목 미비	▸ 행정기관 요청 **조사·수사 자료 항목** 신설 - (**조사자료**)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등 - (**수사자료**) 신문조서, 진술조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 등	안 제8조의3 신설
'징계부가금 관리대장'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	▸ 징계부가금 납부·체납 현황 등 관리 대장 미비 ※ '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'은 징계부가금 의결 사항만 기재 가능	▸ **'징계부가금 관리 대장'을 신설**하여 **납부·체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** ※ 시스템상 '징계부가금 관리 대장' 작성·보관 근거 마련	안 제25조 개정 및 별지 제6호 서식 신설
징계의결의 '경정'결정시 작성 방법 및 통보 대상 규정 신설	▸ 징계의결의 경정사유(계산·기재 오류)만 규정되어 있고, 경정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 대상 미비	▸ 경정결정 시 **작성 방법·통보 대상** 신설 - (**방법**) 경정결정의 원본을 징계의결서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 - (**대상**) 징계의결등 요구권자, 징계처분권자 등	안 제18조의2 개정 및 별지 제4호의5 서식 신설